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지가 우선

김영란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지난달 광주 북구청에서는 다산왕 선발대회가 열렸다. 당시 대회에서는 7녀1남을 둔 주부가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모두 막내가 아들이었다. 1위를 한 주부는 남편이 8대종손이어서 아들을 낳기 위해 8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다. 이에 대해 2월 17일 보건복지부는 “다산왕 선발대회는 적절한 출산 장려정책이 아니며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양성평등정책에도 어긋나므로 열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전국 16개시·도에 보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1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3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력 부족,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낮은 출산력 수준”에 대한 논의들이 인구학에서부터 여성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낮은 출산력 수준은 각 지방자치체의 경우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그 이유는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인구정책 논의와 무관하게 행정단위로서 지방자치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수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각 지방에서는 인

구수를 늘리기 위해 출산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농민 여성이 출산할 경우 농가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늘어났다. 광주에서 열린 다산왕 선발대회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저출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은기수 박사(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학 교수)는 최근 출산율 저하의 인구학적인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혼인연령의 상승을 들고 있다.

즉 피임, 인공임신중절 등으로 이루어진 연령별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이 1990년까지는 출산율을 낮추는데 기여를 하다가 1990년부터는 더 이상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출산율을 꾸준히 낮추는데 기여해온 혼인상태별 구성의 영향은 그 영향력이 더 강해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초혼연령의 상승과 연령별 미혼율의 증가가 합계출산율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은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관계가 깊다. 결혼연령의 변화나 혼인상태구성의 변화와 같은 인구학적 현상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부담의 증가 등 가족 및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만혼풍조가 자리잡고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 독신가구가 늘어나는 등 출산률 저하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같은 자녀 교육비 부담도 소 자녀 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 일부 가족학자들은 부모님을 비롯하여 친척, 심지어 동네 사람과 함께 자녀를 키우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막힌 공간인 아파트에서 어머니 혼자서 자녀 양육을 담당함으로써 오히려 양육부담이 커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요약하면 현재와 같이 합계출산률이 낮아지게 된 것은 가족을 둘러싼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인구학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합계출산률 저하의 요인들로 거론되는 변수들이 명확한 인과관계검증을 거친 것은 아니며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것들이다.

그러면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인구정책이 출산 장려로 나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출산 장려정책을 폄기 이전에 아동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족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양육과 관련된 가족지원정책은 특히 인적자원활용에서 여성고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프랑스의 경우 가족지원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양육책임으로 발생하는 기혼여성노동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독립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동 연관적인 프로그램인 보육지원

정책을 활성화하였다. 프랑스 가족지원체계의 주된 정책들로는 아동양육에 대한 보상제도인 가족수당과 개별가정의 보육지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유급육아휴직 및 가정보육지원수당, 등록보육사 보조금 등이 있다. 이러한 가족지원체계는 직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지는 않지만 유급육아휴직과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수혜 대상에 포함되고 수당액도 자녀수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아동양육의 책임을 사회와 가족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취업 여성이 가족과 고용을 조화롭게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보육관련 가족지원체계를 수립한다면 출산 장려는 간접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아동양육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적절한 가족지원체계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체의 경우 특히 면 단위 이하로 내려갈수록 보육시설이 부족하며 있다하더라도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또 농민 여성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제도적인 보육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적정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보조금 지급이나 다산왕 선발 등의 방식으로 출산을 독려하기보다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농민여성의 아동양육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동양육관련 가족지원정책을 활성화하고 각 지방자치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 실정에 맞는 보육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간다면 여성들은 출산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